



음성출력용바

# 수 원 지 방 법 원

## 제 2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6구합64525 해임처분취소

원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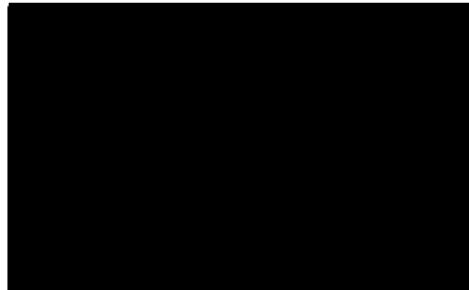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민정, 오범석

피 고

경기도 교육감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26.

### 주 문

1.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9. 안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경기 [REDACTED]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어 높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체의 직간접 성적조작 및 감독 부실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엄중 처벌함을 '2015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이를 학교에서도 연수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 6. 23.(화) 광주중학교 성취도평가시험 중 일부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교무부장 유병철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하여 1, 2, 3교시의 문제를 교과목 담당교사들에게 풀게 하고, 답을 표시한 문제지를 시험 중인 교실에 배부하도록 하여, 결국 2교시 수학과 3교시 영어시험 시간 일부 반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1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갑 제2호증)을 하였다.



음성출력용바코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중학교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자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교사들로 하여금 미리 문제지를 풀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이를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조작 행위를 직접 실행한 교무부장 유병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심각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위 가.의 1)]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2, 5, 6, 8 내지 19의 각 기재, 증인 최종엽, 김해순, 양경희, 이정아, 김소영, 유병철, 이근자, 이슬기, 홍미숙, 이남희, 조청희, 이영주, 한송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은 2015. 3. 17. '관내 전체중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2015. 6. 23.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내용'의 2015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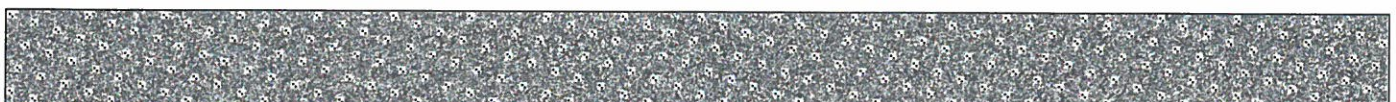


본계획(을 제1호증의 1)을 수립하여 이를 광주중학교 등 관내 중학교들에게 통지하였다. 위 기본계획에는 학업성적 조작·감독부실 등 비위 교원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2).

나)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수시로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이 사건 평가시험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므로 3학년 담임들이 학교 평가를 책임지는 것이다, 2년 연속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니 올해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학업성취도가 성과급에 반영된다, 전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A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학생들 앞에서 3학년 담임교사 조창희에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쁘면 담임을 혼내 주겠다'고 말하거나, 수학교사 한송은과 거의 매일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으면 다면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성과급도 적게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라고 강요하였다.

다) 원고, 교무부장 유병철, 3학년 학년부장 이정아, 연구부장 조창희, 행정실무사 이남희는 2015. 6. 17. 점심에 광주중학교 교감실에서 국가수준성취도평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이정아로부터 '전년도에는 성적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주었는데 올해는 안주는지'라는 말을 듣고, 유병철에게 성적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8. 광주중학교 미술실에서 연구부장 조창희 주관으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교사 연수에서,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면 안된다'고 수차 강조하고, 유병철에게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를 만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유병철은 학급별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각 20점 미만인 학생을 음영처리한 자리배치표를 만들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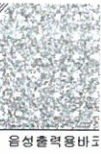
마) 행정실무사 이남희는 이 사건 평가시험 며칠 전에 그 감독교사 시간표 (1교실 당 주·부 감독교사 2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일반적인 시험감독 배치 원칙(담임교사 및 담당과목 교사 배제)과 달리 3학년 담임교사들 중 상당수를 담당학급의 감독교사로 배치하고, 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 담당교사를 당해 과목 시험의 감독교사로 배치하는 것으로 위 감독교사시간표를 수정하였다.

바) 유병철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인 2015. 6. 23. 광주중학교 도서실에 설치된 교사본부에서, 1교시 국어시험 중에 국어교사 황은진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답이 표시된 국어 문제지를 이용하여 문제지에 정답을 표시한 12부의 필사본을 만든 후에 그 중 일부 문제지를 1교시가 끝나갈 무렵에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수학교사 신정엽, 김소영이 풀어 놓은 수학 문제지와 영어교사 양경희가 풀어 놓은 영어 문제지를 이용하여 문제지에 정답을 표시한 영어 문제지 및 수학 문제지 각 12부의 필사본을 만들어 이를 해당 과목의 시험 중에 일부를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사) 이 사건 평가시험의 감독교사 한송희, 권구현, 오세정, 이근자, 홍미숙 등은 2교시(수학 시험) 또는 3교시(영어시험) 중에 유병철로부터 전달받은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와 성적미달 학생들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수정액으로 지워 주고 문제를 다시 풀어 보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적미달 학생들이 정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을 제3호증의 5, 6, 8, 11, 증인 한송희, 홍미숙의 각 증언 참조).

2) 또한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최종엽, 김해순, 이정아, 김소영, 유병철, 이근자, 이남희의 각 증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증인 유병철은 피고의 이 사건의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① 2014년도 평가시험 중에 교사들이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09:20경 교사본부에서 원고로부터 '부감독은 시험 감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국어시험은 누가 풀기로 했냐'는 말을 듣고, 이를 전년도와 같은 일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배부하였고, ② 2교시 수학시험 진행 중에 원고에게 '원고와 같등이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홍명숙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거지는 주지 마'라고 대답하였으며, ③ 3교시 영어시험이 끝날 무렵 원고가 정답을 기재한 문제지 중 배부하고 남은 문제지가 교사본부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부터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④ 같은 날 원고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앞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무부장이 어디에 있나, 총대를 메준 교무부장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상담교사 증인 이근자는 이 법정에서 ① 평가시험일에 다른 학교에 상담지원 출장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평가시험일 직전에 원고로부터 부감독으로 시험 감독을 들어가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고, 당시 원고로부터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들이 최소 7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② 평가시험일 점심시간에 원고에게 '학생들이 올백 맞겠네요'라고 말하자, 원고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눈치도 없다, 경안, 탄벌, 경화여중이 학교평가 상향되어 받은 성과급이 얼마인데 그러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연구부장 증인 김소영은 이 법정에서 '1교시 시험 시작 무렵에 교사본부에서 원고가 유병철에게 '부감독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과목은 누가 풀기로



음성출력용바코드

했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위 시험 당일 1, 2교시에 교사본부에 상주하고 있고 3교시에도 약 10분 정도 교사본부에 머물러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지시로 유병철을 찾아다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3학년 교사부장 증인 이정아도 이 법정에서 3교시 영어시험 시간에 원고가 '도서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8반 양원혁 학생을 감독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영어 답안지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재판 과정에서 평가시험일의 오전에 보건실과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병철의 성적조작 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① 보건교사 최종엽 작성의 '평가시험 당일 1교시 시작 무렵에서 2교시 시작 무렵까지 보건실에서 원고와 함께 메르스 학교대응 매뉴얼 점검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② 행정사 김해순 작성의 '원고가 1교시에는 자리에 없었지만 2교시 내내 교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2) 등을 제출하였는데, 증인 최종엽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전화지시만 받았을 뿐이고, 원고를 만나서 메르스 대응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김해순도 이 법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갑 제4호증의 2(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에 원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1)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위 2)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3학년 담임교사들 및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교사들 등에게 이 사건 평가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유병철에 대한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 작성·배포 지시 및 담임교사 또는 동일과목 교사로의 감독교사 배치 등을 통해 미리 위 평가시험에서 용이하게 성적조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병철로 하여금 감독교사들에게 정답을 기재한 문제지를 배포하도록 유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교사들이 유병철로부터 전달받은 문제지를 이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화이트로 지워 주고 다시 풀라고 하거나 손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러한 원고의 비위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재량권 일탈·남용한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은 1.(성실의무위반)의 라.(기타)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은 1.(성실의무 위반)의 라.(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강등, 정직"에, 그 이상의 비위의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 29540 판결 등 참조).

2) 위 나.의 1), 2)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평가시험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방법 개선,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므로, 그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성적조작 행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위 평가시험 결과는 학생의 개인 성적(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 중 1.의 라.(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 처분을 할 수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정년을 약 2년 남겨둔 만 60세의 교감으로서,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광주중학교의 학교평가를 향상시켜 학교와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의도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와 유병철의 비위행위는 모두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유병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정직"은 이 사건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징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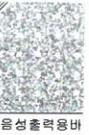
라) 원고는 1989년경부터 26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고, 2013년도에 교감으로 승진할 정도로 특별한 과오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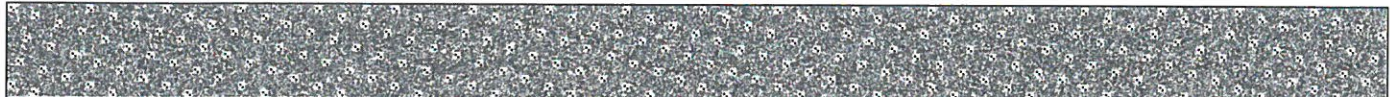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성출력용바

재판장	판사	최복규	최복규	
	판사	이용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박보미	





음성출력용바코드

별지

## 관계 법령

### ■ 국가공무원법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 공무원 징계령

####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 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④ 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임기관의 장이 검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음성출력용비: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취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끝.





음성출력용바

# 정본입니다.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김정훈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